

대통령령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①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”를 “국립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⑥항 중 “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”를 “교육감이 정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5조(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·공립·사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(이하 “자율학교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<u>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</u>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략) ② ~ ⑤ (생략)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<u>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<u>2020년 8월 5일부터</u> 시행한다.	제105조(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<u>국립학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<u>교육감이 정한다.</u>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<u>2021년 3월 1일부터</u>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(학교정책과)	
연 락 처	(044) 203 - 6203